# 이전가격 관리 개요 및 2020년 이전가격 규정 개정사항

March 2021



## 목차

- 1 글로벌 이전가격관리 개요
- 2 2020년 이전가격 규정 개정사항
- 3 베트남 세무조사 실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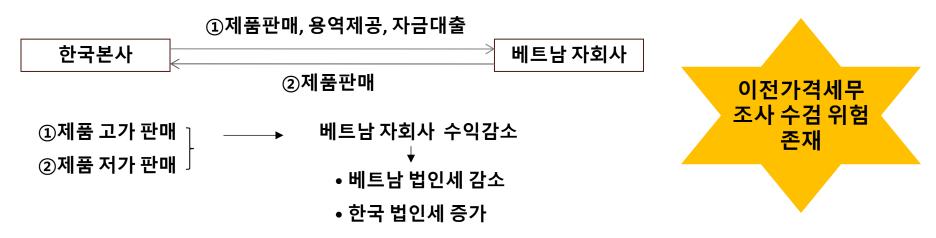
## 제1부분 글로벌 이전가격관리 개요



#### 1.1 이전가격 개요

#### 이전가격이란

국외 특수관계자간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 수수되는 거래가격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정상가격(시장가격) 대비 고가나, 저가로 거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외 기업으로 이전함으로써 세금부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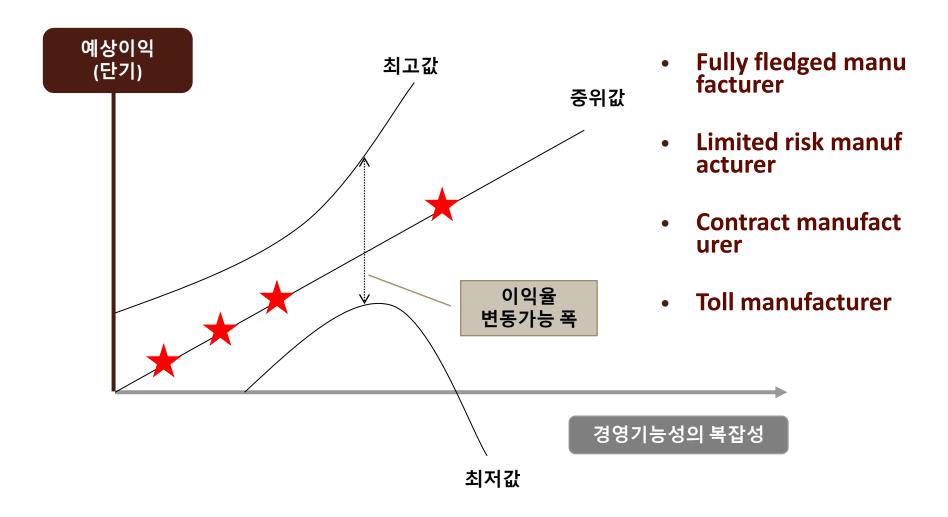
• 이전가격 세제: 관계사간 거래가격 조작을 통해 이익을 국외로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APA(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 각국 과세당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미래의 이전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는 제도로서 과거 거래 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가능.



## 1.2 기능위험분석 - 법인별 기능/위험의 수준 검토





## 1.3 이전가격 결정방법

구분	방법	접근방법별 구분	검토대상별 구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UP)	가격접근법	
전통적 방법	재판매가격방법 (RPM)		
	원가가산방법 (CPLM)		일방검토방법
기타의 방법	거래순이익율방법 (TNMM) 비교가능이익방법 (CPM)	수익률접근법	
	이익분할방법 (PSM)		쌍방검토방법



#### 1.4 이전가격 관리의 현실



- 기업들이 일반적인 공정거래 개념이나 시장가격 기준과 혼동
  - → 이전가격 운영이 법적 기준에서 어긋나 이전가격 위험 발생 사례 다수
- 중요한 기능이 수행되는 장소(주로 한국)와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장소 간 불일치로 기능/이익수준 간 mis-match 심화
  - → 구조적 이전가격 위험 발생 요인
- 이전가격 관련 문서(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는
   대부분 이미 발생된 현상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작성
  - → 이전가격 정책과 이전가격 평가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가격 정책이 미비하거나 평가 결과와 정책 운용의 일관성이 없어 운영 최적성 (합리성+방어가능성) 담보에는 한계가 있음



#### 1.5 글로벌 이전가격 환경 및 이전가격 관리의 필요성

#### BEPS 도입 이후 각국 과세당국은 기업의 이전거래 행태에 대한 내부정보를 광범위하게 축적

- Master File, Local File 및 CbCR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이전가격 관련 정보 축적
- 국내/외 세무조사 시 BEPS 보고서를 기반으로 보다 상세한 자료 요구
- 국가 간 세무정보 교환 체제의 지속적 활성화

####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국 과세당국의 공격적 이전가격 조사 확산

-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시 잔여이익분할방법 (RPSM)을 적용한 대규모 과세 사례 속출
- 미국 IRS의 RPSM 적용 Template 공표 및 APA 등에 직접 적용 사례
- 기존 선진국은 물론 중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사 및 과세 동향

#### 이전가격 위험의 급증

선제적 이전가격 Practice 점검을 통해 합리적 이전가격정책 수립/실행 및 효과적인 과세당국 Challenge 대응 필요



#### 1.6 실질에 부합한 거래유형 별 정책 설정

-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각 이전가격 기준 수립
- 각 이전가격 거래유형별 정상이익수준 검토
- ① 면허제조업자의 경우, 본사의 해외법인 향 판매거래의 적정마진 검토
- 계약제조업자의 경우, 해외법인이 달성할 적정마진 검토
- ③ 기술로열티의 정상범위 검토
- ④ 경영자문료

- (5) IT Service Fee
- 6 지급보증수수료

- ▶ 총원가 + 정상마진(FCMU)
- ▶ 총원가 + 정상마진(FCMU)
- ▶ 제3자 매출액 X 정상 로열티 율(%)
- 해외법인 지원관련 본사의 Cost + 정상마진 / 경영자문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재성 입증자료 구비 / 경영자문서비스 편익 분석
  - 해외법인 지원관련 IT Service Fee의 Cost + 정상마지
  - \*) ④,⑤은 합리적인 Allocation Key 선정 및 배분을 통한 관련원가 집계가 핵심적 업무
- 국세청 요율 or 국조법 상 평가방법(위험접근법, 편익접근법)



#### 1.7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규정

■ OECD의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Action plan 핵심 내용

정상가격원칙

경제적 실질과 가치창출 기여도에 따라 이익 배분

문서화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국가별보고서(CbC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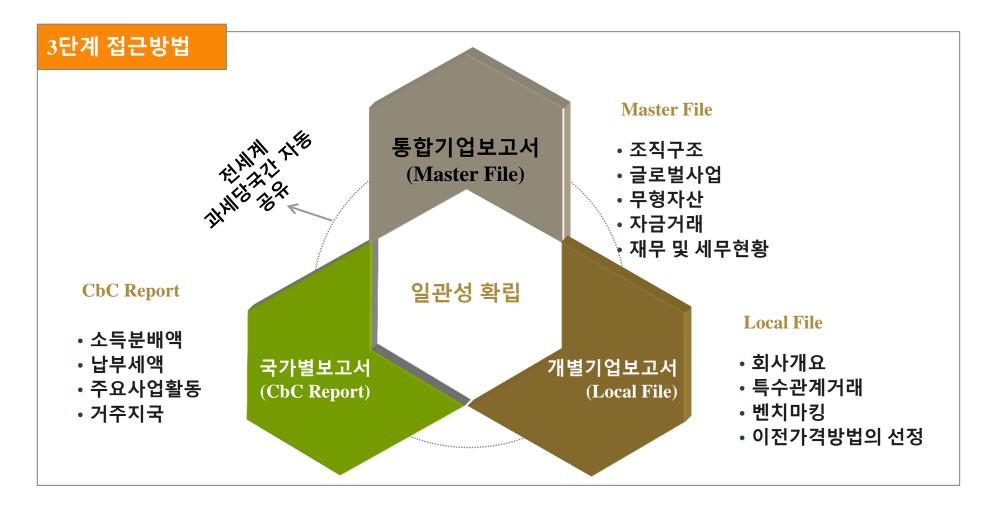
분쟁해결

상호합의절차 → 해결 불가 시 강제중재 적용

-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제시
  - 각 구성원의 수행 기능 및 부담 위험을 경제적 실질과 가치창출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전가격검토
  - 이전가격정책 수립 또는 필요의 경우 기존의 이전가격정책 변경, 적극적인 이전가격 관리 필요
  - 국내/외 입법동향 파악, 이전가격문서화 관리 및 모니터링, 해외 자회사와 협업 체계 구축
  - 무형자산의 중요성 부각: 무형자산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내부거래 구조 검토 필요



#### 1.8 이전가격 문서화 구조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기능분석 결과를 이전가격 문서화 정보(Master File, Local File, CbC Report)에 일관되게 반영



제2부분 2020년 이전가격 규정 개정사항



#### 2.1 개정 이전가격과세규정의 발포

#### 베트남의 이전가격 과세 동향

- 지난 1월 5일 하노이 세무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주요 진행 과제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 가격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 년째 적자를 신고하면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FIE)과 이전가격 거래로 의심되는 비즈니스를 수행한 외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비나타임즈: 하노이 세무국, '이전가격' 정밀조사 진행 예정 (2020.01.18)
- 베트남 정부가 지난 6/24일 발표한 시행령 132/2020/ND-CP에서는 건전한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전가격 책정을 방지하고 최저 투자자금 한도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조세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특수관계인 거래가 진행되는 263개 업체를 점검해 5,250억동(약 2,26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과 체납액을 징수해 9조동 이상의 손실을 줄이고 과세소득 약 4조 1,900억동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비나타임즈: 이전가격에 따른 이자비용 공제한도 성향 조정 등 (2020.11.16)

#### 개정 이전가격 과세규정

- **Decree No. 132/2020/ND-CP**(이하 "Decree 132", 2020년 12월 20일부터 유효, 2020년 법인세 과세소득분 부터 적용)
- The Law on Tax Administration **No. 38/2019/QH14** (이하 "LTA",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 LTA 신규정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인 **Decree 126/2020/ND-CP**(이하 "Decree 126", 2020년 10월 19일 발포)



## 2.2 신규정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의무

구분	내용	
적용대상	<ul> <li>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하여야 함.</li> <li>■ 베트남내 관계사거래만 발생하며, 해당 관계사간의 법인세율이 동일함과 동시에 세수혜택을 받지 않는 국내관계사간의 거래만 있는 경우</li> <li>■ 매출액이 5백억동(약 25억) 이하이며, 동시에 특수관계자 거래가 3백억동(약 15억) 이하인 경우</li> <li>■ 단순 기능 업체로 매출액이 2천억동 이하인 업체 및 동시에 영업이익률이 도매 5%, 단순제조 10%, 단순임가공 15% 이상인 경우</li> <li>국가별보고서 - 외국계 회사 : 본국의 모회사가 제출 대상일 경우 제출 대상</li> </ul>	
적용시기	BEPS규정은 2017년부터 적용하였으며, 개정규정의 적용은 2020 사업연도 보고서부터 적용	
제출서류	이전가격거래신고서(TP Form) +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 국가별보고서	
정상가격범위	<b>35번째</b> 백분위에서 <b>75번째</b> 백분위	
신고기한	<ul> <li>■ TP Form은 법인세 신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 함.</li> <li>■ TP From은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기전까지 수정 제출 가능함.</li> <li>■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는 법인세 신고서 제출 전까지 작성할 것.</li> <li>■ 국가별보고서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12개월내 작성 후 제출</li> <li>■ 이전가격 자료는 세무조사시 과세당국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예비조사 및 검토시에 제출요청 받은 문서는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연장가능)</li> </ul>	



## 2.3 신규정 개정사항 요약

구분	신규정(Decree No. 132, 126, LTA) 수정 요약
특수관계 범위 확대	다음과 같은 특수관계 형식 추가 :  ✓ 기업이 과세기간에 기업 <mark>출자 자본의 25% 이상을 양도하거나 수령하는</mark> 거래를 하는 경우;  ✓ 과세기간에 기업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개인과 <mark>자본금의 최소 10% 차입, 대출</mark> 거래를 하는 경우
상용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 추가	<ul> <li>상용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전 프로그래밍 된 도구 및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접속 및 관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사업조직에서 수집, 표준화, 저장, 업데이트 및 제공하는 재무 및 경제 정보와 데이터가 포함.</li> <li>과세당국도 상용데이터베이스를 사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추가함.</li> </ul>
이자비용 손금산입 한도 변경	■ 공제가능한 총 이자비용 한도 EBITDA 30% ■ 이자비용=순이자비용(총이자비용-이자수익) ■ 비용 불인정된 이자비용은 공제되지 않은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정상가격범위 산정 방식 변경	■ 정상가격범위: 35번째 백분위에서 75번째 백분위수로 정의 ■ 이전가격 조정은 <mark>중위값</mark> 까지 조정함.
이전가격문서 제출 기한	<ul> <li>이전가격관련 자료는 개정규정에서는 충분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세무조사시 요청된 시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종전에는 요청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삭제됨)</li> <li>참고로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사전위험 조사 및 검토를 위한 자료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5일 연장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Decree 132 제18조 제6항)</li> </ul>



## 2.3 신규정 개정사항 요약(계속)

구분	신규정(Decree No. 132, 126, LTA) 수정 요약
국가별보고서 관련 조항	<ul> <li>✓ 해외 모회사의 국가별 보고서가 자동정보교환(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절차를 통하여 베트남 과세당국에 제공되는 경우, 베트남 현지법인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li> <li>✓ 다음의 경우 해당 회계 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현지에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함.</li> <li>■ 해외 모회사의 관할당국과 베트남 당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자간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베트남은 다자간 협정에 서명하지 않음)</li> <li>■ 해외 모회사의 관할당국과 베트남 당국이 MCAA를 체결하였지만 AEOI를 정지 혹은 국가별 보고서가 베트남에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li> <li>■ 해외 그룹이 베트남에 2개 이상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어느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를 대신하여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지 관할 세무국에 알려야 함.</li> </ul>
과세당국에 대한 금지 행위	■ 과세당국은 권한남용, 업무처리의 지연, 납세자 정보의 유용 등 행위를 금지함.(LTA 제6조) ■ 납세자와 과세당국은 상호 결탁하여 이전가격조정 및 탈세를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거나 연합하여서 는 안됨 (LTA 제6조)
이전가격과세시 과세당 국이 납세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이전가격보고서에 사용된 자신들의 증 거 및 비교가능회사들의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
APA 신청서류 및 절차 의 명확화	■ APA 신청서식 및 필요정보와 APA 갱신, 수정 및 철회의 방법 기록 ■ APA 신청 및 진행은 재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쌍방 APA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및 외교부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도록하고 최종APA의 승인은 총리실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3-1 다자간 협정 서명 국가

#### SIGNATORIES OF THE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S (CbC MCAA) AND SIGNING DATES

Last updated 13 January 2021

1.	Andorra	18-10-2018
2.	Anguilla	11-04-2019
3.	Argentina	30-06-2016
4.	Aruba	12-03-2020
5.	Australia	27-01-2016
6.	Austria	27-01-2016
7.	The Bahamas	10-12-2018
8.	Bahrein	22-12-2019
9.	Belgium	27-01-2016
10.	Belize	20-06-2017
11.	Bermuda	15-04-2016
12.	Brazil	21-10-2016
13.	British Virgin Islands	08-07-2019
14.	Bulgaria	17-11-2017
15.	Canada	11-05-2016
16.	Cayman Islands	21-06-2017
17.	Chile	27-01-2016
18.	China (People's Republic of)	12-05-2016
19.	Colombia	21-06-2017
20.	Costa Rica	27-01-2016
21.	Croatia	06-07-2017
22.	Curação	30-06-2016
23.	Cyprus	01-11-2016

24. Czech Repub	lic 27-01-2016
25. Denmark	27-01-2016
26. Estonia	27-01-2016
27. Finland	27-01-2016
28. France	27-01-2016
29. Gabon	26-01-2017
30. Georgia	30-06-2016
31. Germany	27-01-2016
32. Gibraltar	07-05-2020
33. Greece	27-01-2016
34. Guernsey	21-10-2016
35. Haiti	22-06-2017
36. Hong Kong, China	26-07-2018
37. Hungary	01-12-2016
38. Iceland	12-05-2016
39. India	12-05-2016
40. Indonesia	26-01-2017
41. Ireland	27-01-2016
42. Isle of Man	21-10-2016
43. Israel	12-05-2016
44. Italy	27-01-2016
45. Japan	27-01-2016
46. Jersey	21-10-2016
47. Kazakhstan	12-06-2018

30-06-2016
21-10-2016
27-01-2016
25-10-2016
27-01-2016
21-08-2020
27-01-2016
26-01-2017
26-01-2017
27-01-2016
02-11-2017
25-06-2019
27-01-2016
12-05-2016
27-01-2016
27-01-2016
16-07-2020
21-06-2017
24-01-2019
09-11-2018
27-01-2016
27-01-2016
19-12-2017
19-12-2017

72. Russian	26-01-2017
Federation	
73. San Marino	10-10-2018
74. Saudi Arabia	06-08-2019
75. Senegal	04-02-2016
76. Seychelles	09-07-2019
77. Singapore	21-06-2017
78. Slovak Republic	27-01-2016
79. Slovenia	27-01-2016
80. South Africa	27-01-2016
81. Spain	27-01-2016
82. Sweden	27-01-2016
83. Switzerland	27-01-2016
84. Tunisia	26-11-2019
85. Turkey	30-12-2019
86. Turks and Caicos Islands	21-06-2017
87. United Arab Emirates	24-06-2018
88. United Kingdom	27-01-2016
89. Uruguay	30-06-2016



#### 2.3-2 신규정에 따른 정상가격범위 계산 사례

하위사분위값을 상향조정함으로 인하여 조사 대상회사의 기대이익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이전가격 조사 및 과세를 실시하겠다는 과세당국의 의지로 해석 가능. Global standard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선 현재 개정된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또는 이전가격조사 대응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1	Α	В	С	D
1				
2				
3				
4		Decree 20	Decree 132	
5	1.00%	계산공식		
6	1.25%	"= Quartile (A5:A17,3)"	"=Percentile(A5:A17,0.75)"	
7	1.25%	"= Quartile(A5:A17,2)"	"=Percentile(A5:A17,0.5)"	
8	1.50%	"=Quartile(A5:A17,1)"	"=Percentile(A5:A17,0.35)"	
9	1.50%			
10	1.75%	정상가격범위		
11	2.00%	2.25%	2.25%	
12	2.00%	2.00%	2.00%	
13	2.15%	1.50%	1.55%	
14	2.25%			
15	2.50%			
16	2.75%			
17	3.00%			
18				



## 2.3-3 이자비용 관련 규정

Category	Content	
2017-2018소급적용	적용범위:	
	■ 공제 가능한이자 비용 한도가 EBITDA의 20 %에서 30 %로 증가	
	■ 순이자 비용 (이자 비용 (-) 예금이자 (-)이자 수익)	
	■ 금융기관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금융기관의 차입금, 보험업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보험회사의 차입금, 국가기관의 ODA 차입금에는 적용하지 않음	
	기 납부 법인세 상계처리:	
	■ 세무조사 전:	
	2020년 CIT금액과 상응하는 연체이자의 차액으로 CIT금액을 상쇄. 2020 년에 완전히 상쇄되지 않으면 2020 년부터 향후 5 년 동안 지급 할 CIT에 대해 상쇄.	
	■ 세무조사 후(세무조사 결과 발표)	
	납세자는 세무 당국에 미지급 법인세 금액과 연체료 (있는 경우)를 재결정하도록 요청하여 CIT 금액의 차액을 상쇄. 2020 년에 완전히 상쇄되지 않으면 2020 년부터 향후 5 년 동안 지급 할 CIT에 대해 상쇄.	
2019소급적용	시행령 $68 / 2020 / \text{ND-CP}$ 의 개정 규정에 준수: 미 공제 대출이자 비용은 최대 연속 $5$ 년 동안 다음 과세 기간으로 이월	



## 2.3-3 이자비용 관련 규정 (계속)

Category	Content	
2020회계연도	법인세 계산시 공제가능한 이자비용 확인:	
	공제가능한 이자비용은 한도 EBITDA의 30%	
	Net interest expense – Total interest expense – Deposit interests – Loan interest income	
	EBITDA = EBIT + Net interest expense + Depreciation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은 이월 공제:	
	■ 다음 과세기간의 순이자비용이 EBITDA의 30% 초과하지 않을 시, 당기 한도 초과 이자비용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 공제 가능	
	■ 비용 불인정된 이자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음의 경우 이자 비용한도의 적용은 면제 :	
	■ 금융기관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금융기관의 대출	
	■ 보험업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보험회사의 대출	
	■ 국가기관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대출	
	■ 국가계획, 사회복리 프로젝트 대출	



#### 2.4 베트남 이전가격과세규정의 일반사항

- A. 베트남 세법에서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우선적용하고 당해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익비교법인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및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도록 함. (Decree 132 제13조 및 제14조)
- B. 비교가능성의 확대원칙에 대한 강조 (*종전에는 구법제6조 제3항내용이었으나 별도 조항으로 제9조로 구분함*)

비교가능회사의 최소수 <i>(제7조)</i>	<ul> <li>1개: 차이가 없는 경우</li> <li>3개: 중대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li> <li>5개: 중대한 차이를 대부분 제거할 수 있는 경우</li> </ul>
비교가능회사의 적용연도의 제한 (제7조 및 제9조)	<ul> <li>3개년 연속된 재무데이터가 있어야 함</li> <li>원칙적으로 동일 회계연도를 비교</li> <li>1년의 시간 차이를 조정 확대하여 비교 가능</li> </ul>
비교가능회사의 지역 제한 <i>(제9조)</i>	<ul> <li>베트남 소재 비교가능회사 우선 선택</li> <li>산업과 경제성장의 수준이 유사한 기타국가(지역) 소재 비교가능회사로 선택을 확대하여 비교 가능</li> </ul>



#### 2.4 베트남 이전가격과세규정의 일반사항 (계속)

- C. 경제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구체화 및 과세당국의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의 사용허용 (개정규정: 과세당국 내부데이터베이스(Secret Database)도 동시사용가능)
  - ✓ 납세자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도 이전가격관리와 결정을 위해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 LTA에서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는 1.과세당국 데이터베이스 2.상업데이터베이스 두 가지 종류.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조정시 반드시 LTA에 규정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이전가격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세당국이 LTA에 규정된 데이터베이스 이외의 임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이전가격관리를 하는 것을 불혀.

당해 규정에서는 상업데이터베이스가 명확히 추가되고 데이터 베이스의 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향후 베트남 이전가격 과세조정에서도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기본적으로 상업용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조정 여부를 논의할 것이 기대됨.

- D. 단순기능을 수행하는 납세자의 영업손실 불인정 (제14조)
  - ✓ 기본적으로 기능/위험수준이 낮은 제조 및 판매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음.

납세자가 전략적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저부가가치 생산활동에 종사하거나 재고위험이나 시장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무형자산사용과 관련된 매출이나 원가를 발생시키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2.4 베트남 이전가격과세규정의 일반사항 (계속)

- E.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과세당국의 책임과 권한, 납세자의 권화에 대한 제시 (제20조)
  - ✓ 과세당국의 이전가격관리에 대한 구체화된 조정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반하여 납세자의 소명권한을 명시
  - ✓ 종전에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세무조사에서 납세자들이 준비한 이전가격 보고서 등의 자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세무당국의 내부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이전가격과세금액을 산정하여 조정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이전가격 조정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과세당국의 비밀비교가능기업으로 이루어지는 폐해가 있었음
  - ✓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신규정에서는 종전에 과세당국의 일방적 과세를 제한하고 납세자에게 이전가격 조정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이전가격규정을 위배하여 과세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전가격보고서에 사용된 경제분석 및 증거자료에 대해서 설명하게 하고, 과세당국이 이를 허용하여야 함.



## 2.5 한국 및 중국 이전가격 규정과의 비교

	한국	중국	베트남
국내비교가능회사 의 선호	이전가격 적용 초기: 전통적인 접 근방법의 선호, 국외비교가능회사 를 배제하고 국내비교가능회사만 을 선택 과거 심판례: 한국과 경제적 상황 이 유사한 시장에 소재한 비교가능 회사들에 대해서는 인정	과거: 국내 비교가능회사들에 대한 적용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음 현재: 대부분의 과세당국이 중국과 유사한 경제상황에서의 비교가능회사를 이용한 경제분석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추세	산업과 경제성장의 수준이 유사한 기타국가(지역) 소재 비교가능회 사로 선택을 확대하여 비교 가능
비밀비교가능회사 (Secret Comparable) 의 사용	이전가격 적용 초기: 일부 과세당 국에서 세무조사를 시행할 때 비밀 비교가능회사를 사용하였다가 이 후 행정심판 등에서 사용을 금지함 으로 인하여(심사법인2002-101, 2005.05.30)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됨	비밀비교가능회사를 사용한 이전 가격조정을 관련 세법에서 허용하 고 있으나 2008년 본격적으로 이전 가격을 시행한 시행초기 몇 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내부데이터베 이스를 사용한 과세 조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신규정은 여전히 비밀비교가능회 사의 사용(Secret Comparable, Government database)을 허용하고 있음.
보고서 제출기한	사업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	고정된 의무제출기한이 없으나, 지역별로 이전가격문서를 법인세신고시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경우가 많음	고정된 의무제출기한 없음



## 2.5 한국 및 중국 이전가격 규정과의 비교

	한국	중국	베트남
미제출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와 별도로 이전가격 방어상 불이익 大 예상)	과태료 없음	과태료 없음. 과세당국이 인정과세를 할 수 있으 며, 비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하 여 세액을 산정함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전가격 문서화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	일반적인 법인세 지연납부의 경우 (1일 1만분의 5, 연 18.25%)와 달리 낮은 이자율(인민은행 대출기준이 자율, 2019년도기준 연 3~4%)을 적 용	납세자가 부정확한 이전가격신고 및 문서화를 통하여 납부세액을 감 소시킨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 연10.95%)
이전가격과세시 상 호합의 제기로 인한 징수유예 제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개 시되는 경우 고지유예, 체납처분유 예, 징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 제3부분 세무조사 실무



#### 3.1 이전가격 세무조사

#### 이전가격과세위험의 발생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거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당기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기업

과소이익 또는 결손이 발생한 기업이 다양한 종류의 특수관계자 거래존재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회사와 빈번한 거래가 있거나 손익의 변동이 심한기업

그 중 과세당국은 적은 이익 또는 결손이 발생하지만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한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함



#### 3.2 베트남 세무조사대응 실무

#### 1. 조사 사전준비 단계

- 조사 통지서 수령 후 조사기간(field 조사 기간 구분하여 파악), 조사 대상 사업연도, 세목, 조사팀 구성원 확인
- 준비자료목록 수취 및 자료 준비 방향성 결정(e.g., 어떤 수준으로 자료를 제출할지 1차적 판단)
- 주요 예상 적출사항 사전검토, 각 이슈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 및 추납세액 산정
- (이전가격) 회사의 key member 인터뷰 실시를 대비하여 interviewee 사전 조율, 해당 직원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 대응방침 교육 실시
- 조사 수검장 준비, 조사팀 응대 방안 및 일정 수립.

#### 3.2 베트남 세무조사대응 실무 (계속)

#### 2. 이전가격 관련 이슈 주요 check point

- 조사팀이 이익접근법 적용 시 : 아래 분석을 실시하여 이전가격의 적정성 주장 근거 마련, 낮은
   이익의 사유는 이전가격 外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임을 입증
  - **판가요인 분석:** 제품 판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매출 또는 수익성 감소 (e.g., 수주 단가의 지속적 하락 입증 자료, 경쟁사 증가에 따른 가격경쟁 격화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등)
  - 원가요인 분석: 인건비, 원재료 등 직접 제조원가 및 제조간접비 고려. 연도별로 판매비,
     관리비를 break down 하여 검토 후 타 사업연도 대비 비경상적 비용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원인 분석 후 조정요인 발굴
  - 물가상승 요인 등 기타 이전가격 외적 요인에 대한 분석

#### 3.2 베트남 세무조사대응 실무 (계속)

#### 2. 이전가격 관련 이슈 주요 check point (계속)

- 조사팀이 개별거래접근법 적용 시 : 조사 초기 단계에서 각 특수관계거래별로 적정성을 challenge 하고, 최종적으로 이익접근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 개별거래접근법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상황을 정치하게 파악하고 각각의 세부대응자료별로
     대응 수준에 대한 의사 결정 필요
  - 특수관계자로부터 개별 수입원자재에 대한 수입가격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sample 자료
     준비
  - 당사가 본사에 마땅히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고 있지 않은 항목(각종 용역거래, 로열티 등 실제 본사로부터 지원 받았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을 분석 후 계량화 하여 대응



### 연락처

김일중 회계사

**Managing Partner / CPA (Korea, US Delaware)** 

이전가격 담당 파트너

**Mobile:** +84 86 992 3374 (Vietnam)

+86 186 0210 9447 (China)

+82 10 8220 3374 (Korea)

Email: <u>ilchung.kim@ctacgroup.com</u>

Web: www.ctacgroup.co.kr

장지석 회계사

Partner / USCPA

이전가격 담당 파트너

**Mobile:** +84 98 103 5177 (Vietnam)

+86 186 1692 8638 (China)

+82 10 2343 1327 (Korea)

Email: johan.jang@ctacgroup.com

Web: www.ctacgroup.co.kr

